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206-045호 (심의일: 2022.06.23)

### [ 원데이자동차보험(2206) ]

# 고객님을 위한 자동차보험 설명서

-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면, 추후 해당 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발행일시: 2024.09.06 13:26 발행자: 원데이웹(A)

※ 아이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서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 보험과 달리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구 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가입 형태	의무*+임의	임의
가입 기간	1년(매년 재가입)	1년/3년/20년 등
보장 대상	<b>민사책임</b> (대인/대물 배상책임)	<b>형사책임</b> (교특법상 중과실사고 등)

<sup>\*「</sup>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에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민원·분쟁·상담이 많은 사항

유형 1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가입 관련( | )

###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했는데, 다른 사람이 운전해도 되나요?

특별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 외의 사람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 **대인배상 I** 은 **보상**합니다.)

유형 2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가입 관련(॥)

### 운전자 연령 만26세이상 특별약관에 가입했는데, 만 25세 운전자가 운전해도 되나요?

특별약관에 따라 만 26세 미만인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 **대인배상 I** 은 **보상**합니다.)



유형 3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가입 관련(Ⅲ)

### 대물배상도 대인배상 I 처럼 특별약관 상 운전자 제한을 위반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대물배상도 대인배상 I 처럼 책임보험으로서 의무가입 대상이기는 하나, 대인배상 I 과는 달리 운전자 범위 및 연령 제한을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주 의!

중도 해지 시 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계약 기간 중 해지 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도 해지 시, <mark>남은 보험기간에 해당</mark>하는 <mark>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mark>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mark>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mark> 계약이 해지된 경우, <mark>경과기간에</mark> 대하여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나머지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담보 및 분할납입계약 등의 경우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대인배상 I , 대물배상) 계약**은 자동차의 양도, 자동차의 등록 말소, 중복계약,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mark>주 의!</mark> 음주,무면허,마약·약물운전 운전 중 사고 및 사고 후 뺑소니 시 높은 본인 부담액

####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운전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 로 발생한 손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큽니다.

특히,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운전 중 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위: 원)

발행일시: 2024.09.06 13:26 발행자: 원데이웹(A)

구 분	음주		무면허·뺑소니		마약·약물	
十 正	대인	대물	대인	대물	대인	대물
의무보험	지급보험금(대인담보는 한도 내 지급보험금)					
임의보험	1사고당 1억	1사고당 5천만	1사고당 1억	1사고당 5천만	1사고당 1억	1사고당 5천만

설명서

6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주 의!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인상

교통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시 그 사고 내용,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이력 및 사고 발생 실적, 직년 3년 간 사고 유무 및 사고 건수 등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주의! 실손 담보 중복가입 시 불이익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담보※는 여러 개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고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처리 지원금을 보장하는 특약,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 체결 시 '실손 담보 사전조회'를 통해 담보내용, 가입금액, 보험기간 등을 충분히 확인후 해당 담보의 가입 여부를 결정 바랍니다.



발행일시: 2024.09.06 13:26 발행자: 원데이웹(A)

주의!

예금자보호 관련 유의사항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다만,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구 분	보험회사	외부기관			
		손해보험협회	콜센터	<b>2</b> 02-3702-8500	
상담·민원	전화상담 ( <b>☎</b> :1566-3000)		인터넷 상담	https://consumer.knia.or.kr/ consumer/center/counsel.do	합의 상당점수
	누리집 (☞: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콜센터	☎ 국번없이 1332	G-757 G
분쟁조정			민원신청	https://www.fss.or.kr/	급용감독점 면원 신청
		한국소비자원	콜센터	☎ 국번없이 1372	

### ■ 특성정보 아이콘 설명

0	정보 아이폰 결정		
	구 분	아이콘	설명
기본 특성 정보	예금자보호	예금보험공사 <b>보호금융상품</b> 1인당최고 5천만원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별 특성 정보	실손형 담보	실손형 담보 등복기입 부작회 <b>보 리</b> 보상	실손형 담보는 2개 이상의 계약을 중복하여 가입하여도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각 계약이 비례분담하여 지급합니다.



발행일시: 2024.09.06 13:26 발행자: 원데이웹(A)

이 설명서는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마련한 표준양식에 따라 보험상품의 핵심내 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 관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보험계약 개요

보험회사		하나손해보험(주)			
모집자		하나손해보험 모바일			
보험상품		원데이자동차보험 (차량손해보장형)			
보험기간		2024.09.06 ~ 2024.09.07			
피보험자동차		12덕5458			
보험계약	<b></b>	○ 보험계약자 : 최*혁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계약조건	가입담보종목	타인차량복구			
포함세탁포인	가입특별약관				
보험료 납입방법		일시납			



발행일시: 2024.09.06 13:26 발행자: 원데이웹(A)

### 2.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 가. 계약취소

보험계약자는 **약관 및 청약서를 교부 받지 못했거나,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휴대폰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는 당사 홈페이지(www.hanainsure.co.kr) 또는 콜센터(1566-3000)로 연락주시면 보험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 피보험자동차(사진포함) 및 실소유자, 피보험자와 관련한 사항, 기타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다.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 및 위반효과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른 보험계약을 맺게된 사실,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라.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급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 해당 보험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함



※ 법령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 보험 상품명

법령위반 사실(해당 사항에 체크( )) □ 적합성원칙 □ 적정성원칙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금지

·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합리적·객관적 근거(증빙·참고자료 첨부 必)

보험계약자는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락한 때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발행일시: 2024.09.06 13:26 발행자: 원데이웹(A)

## 3.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보장내역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보상한도)	유의사항
타인차량복구	타인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타인차량의 사고 로 타인의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1사고당 최고 3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50만원)	

<sup>\*</sup> 담보별 보험료는 청약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시: 2024.09.06 13:26 발행자: 원데이웹(A)

### 4. 자동차보험료의 계산 방법

가. 자동차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 합니다. 〈예시〉

납입할 = 기본 + 특약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ㅇ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ㅇ특약보험료: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특약 등에 적용하는 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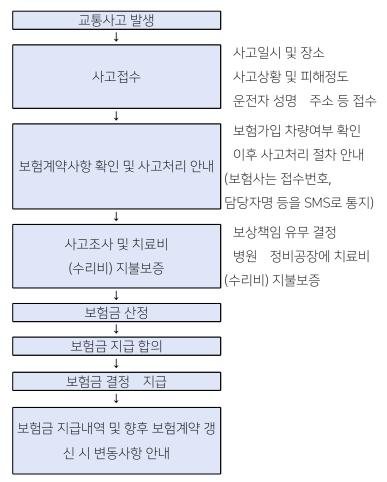
나.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전의 보험료와 변경후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다.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 적정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 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니다

### 5.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처리는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발행일시: 2024.09.06 13:26 발행자: 원데이웹(A)

### 6.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 아래의 유의사항은 보험계약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지급에 관한 약관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 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기명피보험자) 계약의 기준이 되는 <mark>기명피보험자 1인</mark>만 해당되며,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일어난 사고에 한하여만 보상이 가능
- 나. (피보험자동차)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정된 1대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 ① 자가용승용자동차(10인승이하), 자가용승합자동차(16인승이하), 자가용화물자동차(1톤이하) 및 영업용장기렌터카(1년 이상 대여한 경우)
  - ② 운전자 본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 **다. 자동차 소유자**인 타인으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은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라.** 대인배상책임 담보는 기명피보험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보상해드립니다. 단, 책임보험 보험금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 마. 대물배상 담보는 기명피보험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해드립니다.
- **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로 대인배상 담보에서 치료관계비를 보상 받는 경우,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 I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한정
- **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로 대인배상 담보에서 치료관계비를 보상 받는 경우, 사고 후 최초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 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만 보상합니다.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한정
- **아.**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운전자의 가족이 부상당한 경우에는 통상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는데, 치료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치료후 후유장애가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보험금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 타인차량복구비용 담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는 타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손해가 전부 손해일 경우 해당 담보는 사고 발생시 종료합니다
- ※ 타인차량복구비용 담보에서 손해가 발생시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차. 음주·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 시 본인 부담금

피보험자가 음주·약물 운전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동안 사고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를 위반※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하나의 사고 당 다음의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다만, 주 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대인배상 담보: 사망 또는 부상 시]

<u>  데인데경 급포: 사용 또는 무용 제                                  </u>					
구분	음주운전	마약·약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의무보험 (대인배상I)	한도 내 지급보험금				
(네린네성) 임의보험	111701				
(대인배상II)	1사고당 1억원				



발행일시: 2024.09.06 13:26 발행자: 원데이웹(A)

[대물배상 담보: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 시]

구분	음주운전	마약·약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의무보험 (2천만원 이내)	지급보험금			
임의보험 (2천만원 초과)		1사고	당 5천만원	

<sup>\*</sup> 대물배상 의무가입금액

### 7.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 나.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 환급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해지가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등의 경우(약관 참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가입일수별 조정계수(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약관 참조)

-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 다.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 날 개시기간부터 마지막 날 종료시간까지입니다.

### 8. 기타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가. 기명피보험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득하고 타인소유차량의 차종을 운전할수 있어야 하며, 타인소유의 운전할 자동차의 의무보험(대인배상 I, 대물배상)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의 보유자로 하여금 의무 가입하도록하고 있으며, 원데이 보험 가입시 반드시 차량소유주의 의무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서상** 고지된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 해당계약은 **모바일을 통해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로 별도의 **서면질의 없이 고객의 공인인증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계약 시 특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 라. 사고발생시 당사를 통한 긴급**출동서비스 요청시에는 자비부담**이 발생됩니다.

### 마.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음주·무면허운전, 차량·운전자 바꿔치기 등)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에 따라 금지·처벌되는 범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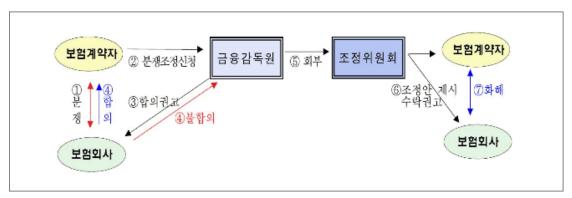
카, 기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시: 2024.09.06 13:26 발행자: 원데이웹(A)

### 9. 기타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 가.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 해당 모집자와 콜센터(1566-3000, 1644-3000)로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 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 **CF.** 본 설명서는 단지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약관 등 **세부 설명 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상품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이 상품설명서는 보험업법,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보험계약 체결 단계 설명사항

### ①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가. 소속, 모집자 : 하나손해보험 모바일 나. 연락처 : 1566-3000 또는 1644-3000

### ②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며, 당사 상담원은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권, 보험료 수령권이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서면, 녹취**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사항을 수령하므로 **보험계약자가 상담원**에게 **구두 (전화통화, 녹취)**로 알리는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 계약의 승낙절차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보험회사가 지체없이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E-mail로 발송 하여 드립니다. 다만,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발행일시: 2024.09.06 13:26 발행자: 원데이웹(A)

###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동일합니다.
- 동 설명서는 이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을 참조하셔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 확인 ]

- 보험계약자께서는 () 일에 이 상품설명서 내용과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당사 One Day App상에서 읽어보시고 이해하였음을 전자서명을 통해 확인하셨습니다.
- ※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상기 모집자에 대한 주요정보는 e-클린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